성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전대비, 안전시설 정비, 관리지역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, 운영 및 관리기간 중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2조~제3조)
○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(안 제4조~제7조)
○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운영(안 제8조~제15조)
○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(안 제16조~제18조)
○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(안 제19조~제24조)
○ 예산 및 홍보(안 제25조~제2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자치법』, 『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』
나. 예산조치 : 135,876천원 정도
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 7. 7.~ 2016. 7. 27.)

5. 검토내용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전대비,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운영,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과 내방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,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, 안 제4조에서 제7조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과 관련하여 사전대비 계획 수립, 안전시설 정비·확충, 관리지역 전수조사, 위험구역 설정·게시 등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8조에서 제15조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·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기준, 운영기간, 임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. 안 제16조에서 제18조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9조~제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과 관련하여 대응계획 수립, 유관기간과의 협조 등을 규정하였고,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는 예산 및 홍보와 관련하여 안전시설 설치비와 안전관리요원 운영비, 주민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 『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』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적합하며, 매년 우리 지역에서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주민과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